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간주예산 1 차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41,200,221	4,236,007
일반회계	132,743,582	3,982,307
특별회계	8,456,639	253,699
기타특별회계	8,456,639	253,69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25,924	9,778
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049,216	31,476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4,275	4,028
주차장특별회계	6,650,574	199,517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37,843	1,135
기반시설특별회계	258,807	7,764

제 2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54,63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